2019년도 제26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 2019. 11. 21.(목요일), 10:30

o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김경숙(분과위원장), 박재화, 박정인, 최현용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25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014건(안건번호 제2019-151503호~15396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19-151505호는 복제·전송자가 제3자로부터 저작권침해 경고 쪽지를 받고 게시물을 삭제한 점을 고려하여 부결함. 그 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김경숙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6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25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6쪽, 9쪽, 10쪽의 밴드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 해당 정보는 비식별 처리한 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이견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밴드명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19-151503호~153969호로 게시물 수는 모두 6,014개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갈음하겠음.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1503호, 151504호는 민원인(익명)이 신고한 건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설정된 링크를 클릭하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에 저장된 다수의 영화로 연결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1503호 게시물에는 '오늘의 영*화*다*운*로*드 받는곳', 안건번호 제2019-151504호 게시물에는 '모든영*호r다운로드 받는곳'이라 기재되어 있음. 심의위원회는 해당 블로그 내 링크 설정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가결한 바 있음.
  (링크로 연결된 구글 드라이브를 제시하면서)'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영화 파일들은 증감 변동하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 클라우드 계정 정보, 펜션 홈페이지를 제시하면서)업로더가 아닌 제3자가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의 위치 정보를 알기 어렵고, 해당 블로그명에 드러난 펜션명 및 연락처, 클라우드 파일 소유자 정보, 펜션 홈페이지의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를 비교해 보면 모두 일치함. 그렇다면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설정한 자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큼.
  서울고등법원은 2017. 3. 30. 링크행위에 대한 민사 방조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음.

저작권법 제133조의3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을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권리 '침해'라 함은 민·형사적인 침해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라고 할 것임. 따라서 링크설정행위가 민사적인 의미에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되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링크설정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19-151503호, 151504호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51503호, 151504호는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 링크 설정 게시물 작성자와 영화 파일 업로더는 동일인으로 보임.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D 위원 : 이견이 없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51503호, 151504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51505호는 민원인(익명)이 신고한 건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에서 '주선(2019)' 영화 전체(1시간 40분 53초)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 "이 영상은 국내 저작권 제재가 들어오면 바로 내리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게시자가 심의대상 게시물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 속에는 번역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 번역자와 게시자가 동일함. 본 건 복제·전송자가 직접 번역하여 우리말 자막을 만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해당 블로그에는 약 1,932건의 중국 영상저작물 게시물이 있음.
  (해당 블로그를 제시하면서)2019. 11. 21. 심의일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이 삭제되어 있음. 게시자는 저작권침해 경고 쪽지를 받고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물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음.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함. 법원은 우리말 자막이 삽입된 영상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

- B 위원 : 심의위원회에서 자막파일 사안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동영상 없이 자막파일만 전송한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음.

국내 정식 개봉예정 영화의 자막파일을 업로드한 사안, 부산 국제 영화제 상영 예정작인데 자막파일을 먼저 업로드한 사안에서 시정권고를 가결하였음. 반면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원 저작물이 개봉된 때로부터 10년이상 경과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파일을 업로드한 사안에서는 부결하였음. 해당 카페가 공통의 취미, 관심사를 바탕으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이고, 불법복제물 공유나 상업적 목적을 이유로 개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음.

- D 위원 : 우리나라는 원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경우에도 2차적저작물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B 위원 : 자막이 필요한 해외영화 수입 계약 기간은 보통 10년인데, 10년 이후에는 공식적인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 안건처럼 자막파일을 공유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임. 산업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C 위원 : 하지만 해당 안건은 이미 익명의 쪽지를 통해 게시자에게 저작권침해 경고가 가해진 것으로 보임.

- B 위원 : 해당 영화의 권리자나 관계자가 경고의 쪽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151505호 우리말 자막이 삽입된 최신 중국 영화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51505호 심의대상 게시물은 현재 삭제가 되어 있는 점, 익명의 쪽지를 통해 게시자가 저작권침해 경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같은 이유로 부결의견임.

- B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51505호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미 삭제되어 있으므로 부결의견임.

- D 위원 : 같은 생각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51505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현재 삭제되어 있는 점, 게시자가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한 후 합법 저작물을 이용하라는 글을 작성한 점을 고려하여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1506호~151528호는 민원인(실명)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다수의 만화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총 45개 게시물).
  누구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URL 주소를 신고할 수 있고, 불법복제물 목록화면, 전송화면, 실행화면 등을 등록할 수 있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1506호~151509호, 제

2019-151512호, 151513호, 151515호, 151516호, 151519호, 151521호, 151522호, 151524호, 151526호, 151528호의 복제·전송자는 동일인으로, 이미 수차례 시정권고를 받은 바가 있음.

- B 위원 : 해당 복제·전송자는 전형적인 헤비 업로더로 보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19-151506호~151528호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 해당 만화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저작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 의견임.

- B 위원 :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51506호~151528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1529호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기초로 보호원이 신고대상 카페인 '☆☆☆(☆☆☆☆☆☆)'를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한편 민원인은 2019. 11. 10. 보호원 신고사이트에 해당 카페의 다른 게시물을 신고하였고, 보호원은 같은 달 18. "신고대상 게시물이 삭제되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음. 해당 카페는 회원 가입한 후 이용 가능함.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네이버 카페 이용자는 2019. 11. 15. 영화 '제미니 맨'을 연상케 하는 제목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이메일 주소와 함께 댓글들이 달려 있음. 보호원 직원은 2019. 11. 18. 심의대상 게시물에 이메일 주소를 남겼음. 한편 영화 '제미니 맨'은 2019. 10. 9. 개봉한 최신 영화임.

  (이메일 화면 및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보호원 직원은 같은 날 영화 파일을 이메일로 제공받았음. 복제·전송자가 보낸 이메일의 받는 사람 목록에 보호원 직원 외에 6명의 이메일 주소가 더 있음.

  (해당 게시자가 다른 영화 복제물을 제공한 게시물을 제시하면서)해당 게시자는 '멜젓소스'라는 문구를 통해 다른 네이버 카페 이용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받아 동일한 방법으로 다수의 영화복제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 B 위원 : 해당 안건은 개인 이메일로 영화를 전송받은 사안인데 시정권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 D 위원 : 저작권법은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메일로 특정한 개인에게 저작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저작물을 다수의 사람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전송'에 해당할 수 있음. 해당 안건의 이메일 화면을 보면 보호원 직원 외에 6명의 이메일 주소가 더 있으므로 '전송'에 해당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이메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아님. 카페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임. 해당 게시물은 그 자체가 불법복제물은 아니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함. 불법복제물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도 시정권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B 위원 : 해당 카페는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하므로 해당 게시물은 외부에서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검색되지 않는 게시물을 시정권고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됨.

- 정현순 팀장 :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영화를 보내주는 취지의 게시물은 법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정착된 형태라고 사료됨.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영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카페 게시물은 대부분 민원인이 신고한 경우임.

- D 위원 : 아무런 대가 없이 영화를 제공하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안건은 확인이 불가능함. 아무런 대가 없이 영화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 영업, 자동차 카페에서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영화나 음원파일을 이메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B 위원 : 본 건은 영업을 목적으로 영화를 전송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19-151529호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영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카페 게시물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메일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받을 상대방을 모집하는 내용의 게시물로, 실제로 게시자가 게시물에 이메일 주소를 남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복제물을 발송하였다는 점에서 게시자의 전송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위 게시물 자체가 불법복제물은 아니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D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다수의 댓글이 남겨져 있고 보호원 직원이 이메일 주소를 남겨 불법복제물이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해당 영화는 개봉한 영화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게시자는 '자유게시판'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다수의 영화복제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 의견임.

- B 위원 : 소수 의견으로, 안건번호 제2019-151529호는 검색되지 않는 카페의 게시글에 대한 사안이며, 전송수단이 이메일로 개인적인 이용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보임. 안건번호 제2019-151529호는 의견이 나뉜 것으로 보임. 다수 위원의 입장에 따라 안건번호 제2019-151529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151530호~153969호는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 게임, 만화, 출판,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영화 '조커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1555호는 2019. 10. 2. 개봉한 미국, 캐나다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19. 11. 6. VOD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영화 '장사리 : 잊혀진 영웅들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1644호는 2019. 9. 25.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19. 10. 21. VOD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1768호는 2019. 10. 2.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밴드에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19. 11. 12. VOD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영화 '열두 번째 용의자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1779호는 2019. 10. 10.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밴드에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19. 11. 1. VOD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출판 ‘너의 SNS가 보여 (출판:글로벌,카카오페이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1783호는 밴드 ‘[○○○○]○○○○○○’에서 해당 어문저작물을 포함한 5개의 텍스트 파일을 첨부파일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어문저작물은 2017. 7. 28.에 출간되어 총 9권으로 완결되었으며, 전권 정품 판매가는 약 25,600원임. 해당 밴드는 소설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임. 해당 밴드의 회원 수는 약 7,705명임.

(출판 ‘밥먹고가라 (출판:라온E&M,카카오페이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1811호는 밴드 ‘[○○○○]○○○○○○’에서 해당 어문저작물을 포함한 3개의 텍스트 파일을 첨부파일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어문저작물은 2017. 6. 27.에 출간되어 총 20권으로 완결되었으며, 전권 정품 판매가는 약 57,000원임. 해당 밴드는 소설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임.

(게임 ‘위닝일레븐 Pro Evolution Soccer (PES)’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2115호는 2018. 8. 30. 출시된 최신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2,64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정품은 약 23,000원에 판매 중이며 배급사는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임. 게시자는 자신이 웹하드에서 다양한 복제물을 판매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영화 ‘제미니 맨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2182호는 2019. 10. 9. 개봉한 미국 영화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최근 불법복제물로 다수 발견되고 있음.

(게임 ‘그리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2200호는 2018. 6. 27. 출시된 최신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64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정품은 약 43,000원에 판매 중이며 배급사는 코드마스터즈임.

(방송 ‘유령을 잡아라(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53030호는 tvN 채널에서 2019. 10. 21.부터 현재 방영 중인 우리나라 드라마 방송물을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해당 방송물은 월요일, 화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영 중이며, 총 16부작임.

(음악 'Love poem (가수: 아이유)'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3125호의 음원파일은 2019. 11. 18. 발매된 최신곡으로 앨범 'Love poem'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저작물의 실연자인 아이유가 작사를 하였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약 101곡의 최신 가요 음원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음원파일은 최근 불법복제물로 다수 발견되고 있음.

(영화 '제미니 맨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3649호는 2019. 10. 9. 개봉한 미국 영화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데드카피인 안건번호 제2019-151530호~15396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51530호~153969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만화, 출판, 영상물, 게임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D 위원 : 데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이므로 이견 없이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보임.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51530호~15396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51505호는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19-151503호~151504호, 제2019-151506호~15396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불법복제물등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3. 폐회 선언

o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26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6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28.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